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6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8월 31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갱신시 자산가액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필요함
- 다만 자산가액의 한도를 “3억원”에서 “5억원”으로 한번에 67%를 상향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과 주택공시가격 상승률과 평균공시가격, 자산한도액 초과자의 규모, 전문가 자문의견, 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가액의 한도를 “3억원”에서 “4억 5천만원”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운영자의 자산가액의 한도(3억원 미만→4억 5천만원 미만)를 변경
(안 제3조제3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3항 중 “5억원”을 각각 “4억 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중 “3억원”을 각각 “4억 5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